

제2020-3호

## 도 시 공 원 점 용 허 가 증

신청인	성명 (명칭)	서울특별시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104-83-00469
	주소 (소재지)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공원의 명칭		상암근린공원		
허가사항	점용목적	「지하수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보조관측망 설치(지하수위 관측 등)		
	장소 및 면적	장 소 : 서울특별시 마포구 상암동 1761 면 적 : 8㎡		
	시설규모	규 모 : 8㎡ 구 조 : 콘크리트 구조물 등		
	기간	2020 11. 10. ~ 2023. 11. 09.(3년)		
조건	붙임 허가조건 참조			
<p>「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허가합니다.</p> <p style="text-align: right;">2020년 11월 일</p> <p style="text-align: center;">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p> <div style="text-align: right; border: 1px dashed black; width: 100px; height: 40px; margin-left: auto; margin-right: 0;">직인</div>				

## 도시공원의 점용허가 조건

1. 공원사용시 공원시설이 손상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만약 손상될시는 수 허가자 부담으로 이를 즉시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2. 토지의 형질변경, 토석의 채취, 나무를 베거나 심는 행위 및 물건을 쌓아두는 행위는 도시공원의 풍치 및 미관을 저해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하고, 공원시설의 보전과 도시공원의 이용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그로 인한 위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3. 지상 및 지하에 설치하는 점용목적의 구조는 견고히 하여 공원이용자에 대한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도시공원의 이용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점용시설로 인한 재산·인적피해 발생시 수허가자 책임으로 한다.
4. 허가내용(허가조건 포함) 위반, 우리 구의 정당한 행정지시 미이행,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본 허가를 득하였을 경우 등에는 본 허가를 취소하고 관계법규에 의거 조치될 수 있습니다.
5. 공사시행 과정 및 설치되는 유도탄(신궁) 발사대로 인한 민.형사상의 책임은 점용허가 신청인에게 있으며 점용허가 신청토지와 연접한 토지주와 분쟁이 발생될 경우 신청인이 처리하여야 하고 행위허가 조건에 대한 해석에 이견이 있을 경우 우리 구의 해석에 따라야 한다.
6. 공사시행으로 인한 소음·비산먼지 등으로 인하여 환경을 오염시킬 우려가 있을 경우 신청자가 분진방진막, 세륜시설 등 환경위해요소 저감시설을 설치 후 공사시행 하여야 하며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민원 및 민간 또는 공공시설 피해발생시 신청인 부담으로 원상복구 등 처리하여야 한다.
7. 도시공원내 모든 시설물 증.개축시는 우리 구에 별도 점용허가를 득하여야 한다.
8. 아래사항이 있을 경우 점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 가. 점용료를 미납한 경우
  - 나. 우리구에서 공공·공익상 필요로 할 때
  - 다. 점용허가 시설물을 상행위 등 점용허가 목적 외로 사용할 때
  - 라. 수 점용권을 타인에게 양도 또는 전대할 경우
  - 마. 중대한 사고로 사회적 물의를 야기 시켰을 경우
9. 상기 5. 각호에 의거 점용허가를 취소하였을 때는 점용료를 반환하지 않는다.
10. 점용허가 만료후 기간연장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기간만료 30일전에 기간 연장신청을 하여야 한다.(점용기간은 최대 3년이며, 연장신청을 해야함)
11. 점용허가 신청 시 제출한 사업계획서와 관계규정을 준수하여야 하고 허가면적 이외의 면적을 점유 또는 이용하는 등 규정을 위반할 시에는 관계법령에 의거 행정조치를 받게 되며 허가가 취소될 수도 있다.
12. 공원점용허가를 폐지.취소시에는 점용허가 시설을 원상복구하고 점용허가 부지는 도시공원시설로 환원하여야 한다.
13. 기타 점용 목적물 설치시 타 법규와 관련되는 제반사항은 해당기관과의 협의를 거쳐야 한다.
14. 점용허가 조건의 해석상 이견이 있을 때에는 우리구의 해석에 따라야 한다.